

대전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109909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29,443,200원 및 그중 527,084,684원에 대하여 2021. 9. 14.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0. 12.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12. 29. 접수 제248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2019. 9. 9. 신용보증원금 5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9. 9. 9.부터 2024. 9. 6.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에 제공하고 2019. 9. 9. C은행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갑 제1, 2호증).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이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3항),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기간 중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 및 종속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제10조 제2항 제2호)을 각각 상환하기로 정하고 있다(갑 제1호증).

3) 원고는 2019. 4. 1.부터 현재까지 보증채무 이행금액 상환의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8%로 정하고 있다(갑 제6호증).

나.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회사는 2020. 12. 22.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29.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24840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7호증).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위약금, 법적 절차 비용 발생

- 1) 피고 회사는 2021. 6. 7.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21. 9. 14.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C은행에 527,084,684원을 변제하였다(갑
제4, 5호증).
- 2) 전항과 같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위약금이 170,620원 발생하였다(갑 제3호증).
- 3) 전항과 같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법적절차비용이 2,187,896원 발생하였다(갑 제3호증).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

-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는데,
각 부동산 시가 합계는 2021. 9. 1. 기준 985,954,800원이었다(갑 제8호증).
-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들이 있었다(갑 제4,
9~11호증).

채권자명	채무 발생 일자	채무액수	잔여 채무액수 기준 일자	잔여 채무액수	근거
D	2019. 5. 29.	125,000,000	2021. 4. 13.	75,000,000원	갑 10
C은행	2019. 9. 9.	700,000,000	2021. 6. 25.	610,572,359원	갑 4
E	2020. 3. 30.	439,000,000	2021. 10. 28.	439,000,000원	갑 11
피고 B	2020. 6. 1.	594,000,000	2022. 3. 21.	579,000,000원	을나 3
F조합	2020. 9. 24.	500,000,000	2021. 8. 8.	487,492,200원	갑 9
	합계	1,858,000,000원	합계	1,703,572,359원	

[인정근거] ①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②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기재, 2020. 3. 30.자 태안군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2022. 5. 6.자 당진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C은행에 변제한 527,084,684원, 위약금 170,620원, 법적 절차 비용 2,187,896원 합계 529,443,20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527,084,6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9. 1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1. 11. 26.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12. 22.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1. 6. 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21. 9. 14. C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회사의 무자력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12. 22. 기준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가 2021. 9. 1. 기준 985,954,800원인 점을 알 수 있고, 소극재산으로 채권자 D, C은행, E, 피고 B, F조합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 액수 합계가 각 채무 발생일 기준(2019. 5. 29.부터 2020. 9. 24.까지) 1,858,000,000원, 변론 종결일 기준(2021. 4. 13.부터 2022. 3. 21.까지) 1,703,572,359원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12. 22.경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어도 1,703,572,359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1,703,572,359원)이 적극재산(985,954,800원)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 회사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B의 악의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B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피고 B 또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 역시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해하면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자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피고 회사는 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B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4) 소 결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2.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20. 12. 29. 접수 제248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석천, 판사 박주원, 판사 서성기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태안군 대 575㎡2. 충청남도 태안군 동[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하1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지1층 348.4㎡

3. 충청남도 태안군 동[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상2층 단독주택

1층 70.5㎡

2층 48.18㎡

4. 충청남도 태안군 대 511㎡5. 충청남도 태안군 동[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하1층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지1층 348.4㎡

6. 충청남도 태안군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지상2층 단독주택

1층 70.5㎡

2층 33.9㎡

